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반면,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따라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본인전송요구 확대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추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본인전송요구에 대한 대리 행사의 경우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된 전송 방법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안 제42조의2 개정)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

정보처리자를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능력을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범위를 확대함

나. 본인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안 제42조의4 개정)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법 제35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에 대한 정보 전체로 확대하고, 전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을 규정함

다. 본인전송요구 대리시 전송방법(안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 개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본인전송요구 대리 행사,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여 행사시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하여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된 방식으로 전송할 것 등을 규정함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본인전송정보 관리·분석 업무 규정(안 제42조의9 개정)

본인전송요구의 확대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본인전송정보에 대한 관리·분석 업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필요에 따라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23. ~ 8. 4.) 진행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5조의2제2항”으로,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을 “개인정보처리자”란”으로,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로 한다.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본인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의미한다. 다만, 경제적·기술적으로 전송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공공시스템운영기관
4.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5. 그 밖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개인정보를 자신,”을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정보 외”를 “정보(이하 “본인전송정보”라 한다) 외”로, “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을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으로,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을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2항제2호”로, “제1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 ① 정보주체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로서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에

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전송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보 전송시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이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제42조의5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보전송자”를 각각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보전송자”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로 한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저장소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여야 하고,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대리인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해서는 안된다. 제4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합의한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

제42조의6제3항제5호(중전의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정보전송자”를 각각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3자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정보전송자”를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열람·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는 방법을 포함한다)

2.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42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기 위하여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전송요구를 위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6제7항제1호나목 중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의료전송정보”를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전송자”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한다.

제42조의9제1항제2호 중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을 “제3자전송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 또는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임받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업무를”을 “업무 또는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임받아 관리·분석하는 업무를”로 한다.

제42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전송자”를 각각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나목 중 “제42조의5제5항”을 “제42조의5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사목 중 “제42조의5제5항”을 각각 “제4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신 설>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① <u>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본인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의미한다. 다만, 경제적·기술적으로 전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u> 1. <u>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u> <u>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u> <u>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u> 2. <u>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u>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략)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신설>

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공공시스템운영기관

4.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5. 그 밖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2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란 ----- “제3
자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본인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로서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외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전송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보 전송시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이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② -----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정보(이하 “본인전송정보”라 한

따라 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해당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보호위원회(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다) 외-----
----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
----- 본인대상정보
전송자가 자율적-----

-----.

④ -----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제2항-----

-----.

⑤ ----- 제2항제2호 -----

-- 제2항 각 호-----

----- 제
2항에 따라 -----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생략)

②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1. ~ 4. (생략)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 7. (생략)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6. · 7. (현행과 같음)

③ -----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 개인정보

-----.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본인대상정보 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저장소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여야 하고,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대리인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⑤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⑥ ----- 제5항-----

-----.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
· 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
법 ·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
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
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
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신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
보전송자”라 한다)-----

-----.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

----- 제1호 및 제2호-----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
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
(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 한정
한다)

3.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

4.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

및 에너지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⑥ (생략)
- ⑦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단서 신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
의 접근수단
가. (생략)

1. 본인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열람·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는 방법을 포함한다)
2.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⑥ (현행과 같음)
- ⑦ -----
- 제3자전송요구
- 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기
- 위하여 제1호-----
-
-
- , 다만, 법 제38조
-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 본인전송요구를 위임 받은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
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
정보

다. (생략)

2. (생략)

⑧ (생략)

⑨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전송정보, 통
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
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
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
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1. ~ 3. (생략)

⑩ · ⑪ (생략)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

-----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
전송정보-----

----- . ----- 제3
자대상정보전송자-----

-----.

1. ~ 3.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의 업무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35조의3제
1항제1호 및 제3호-----

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
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
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
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자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
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
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
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 ④ (생략)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
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
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

----- 제3자전
송 정보(보건의료전송 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 또는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
임받아 ----

3. ----- 법 제35조의3제
1항제1호 및 제3호-----

업무 또는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
임받아 관리·분석하는 업무
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
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 지원플랫폼에 등재된 <u>정보전송 자</u>,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 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 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 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 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1. (생략)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u>정보전송자</u>는 제외 한다) ③ (생략)	-----. ② ----- ----- <u>제3자대상</u> <u>정보전송자</u>-----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3자대상정보전송</u> <u>자</u>---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연 락 처	(02) 2100 - 3172